

기 업 비 밀
사 외 비 CONFIDENTIAL

KT&G 기업지배구조헌장

제 정 2003. 06. 25.
 개 정 2005. 09. 14.
 개 정 2006. 04. 19.
 개 정 2009. 03. 13.
 개 정 2010. 03. 31.
 개 정 2012. 07. 18.
 개 정 2015. 03. 19.
 개 정 2019. 06. 13.
 개 정 2022. 02. 24.
 개 정 2023. 12. 07.
 개 정 2024. 08. 08.

전 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최고경영자의 책임하에 관리자 및 구성원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가치와 구성원가치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2.24>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독립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2.24>

I. 주주의 권리와 주주권 보호

1.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2.24>
- 이익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기 업 비 밀
사 외 비 CONFIDENTIAL

- ④ 회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2.24>
- ⑤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2.24>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집중투표제 등을 통하여 소수주주권을 최대한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2.24>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1.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Ⅱ. 이 사 회

2.1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2.24>

- 경영목표와 전략
- CEO의 선발과 승계계획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수준
- 고위 경영진의 임면 및 보상
- 사업계획 및 예결산
- 대규모 자본지출
- 대규모 차입 및 대여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
- 위험관리 및 재무통제
- 기업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관계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① 이사는 최상의 개인적, 직업적 윤리와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또한, 이사는 탐구적인 자세와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 및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주요한 직업상 책임의 변화를 포함하여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법적 지위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여야 하며,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자,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2.2.24>

2.3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9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다만,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 2009.3.13, 2012.7.18, 2022.2.24>

②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신설 2010.03.31> <개정 2022.2.24>

③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19>

기 업 비 밀
사 외 비 CONFIDENTIAL

④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제정·운영한다.

⑤ 이사회 회의 개최 시 그 경과과정, 중요한 토의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9, 2022.2.24>

2.4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다.

(사장의 선임)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물색하고 추천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개정 2022.2.24, 2024.8.8>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장과 경영계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22.2.24, 2023.12.7>

(사내이사의 선임)

-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심사 후 적합자로 제안된 사람 중에서 최종 사내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9.6.13, 2022.2.24, 2024.8.8>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물색한 후보자와 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의 자격심사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경영·경제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된다. <개정 2022.2.24>

- ②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2.24>

2.5 사외이사의 역할 · 권한 · 의무

-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 지원한다.
- ② 사외이사는 취임승낙 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선임될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공시한다.

기 업 비 밀
사 외 비 CONFIDENTIAL

-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가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일 3일전까지 소집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6.4.19, 2022.2.24>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개정 2006.4.19, 2022.2.24>
- ⑤ 사외이사는 고위 경영진의 배석 없이 사업장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을 촉진하기 위해 사외이사들은 연 2회, 회사의 사업장들을 고위 경영진의 참석 없이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재무, 법률 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2.2.24>
- ⑦ (삭제) <개정 2009.3.10>
- ⑧ 연 2회 이상 회사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2.6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한시적인 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9.14, 2022.2.24>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며, 그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신설 2005.9.14, 2022.2.24>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04.19, 2010.03.31, 2022.2.24>
- ④ 이사회는 각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개정 2022.2.24>
-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를 결정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와 경영진 및 이사회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를 개발한다.
- ⑥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 ②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심의나 결의에 대한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2.7.18, 2022.2.24>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22.2.24>
- ④ 이사는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라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한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12.7.18, 2022.2.24>

2.8 윤리와 이해의 상충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구성원은 물론 이사들도 언제나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이사회는 「KT&G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및 「이사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행동준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어떤 이어나 경영임원에 대해서도 KT&G 윤리행동준칙의 준수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이어나 경영임원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사장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사직해야 한다. <개정 2019.6.13, 2022.2.24>

③ 모든 이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영업적 또는 직업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토론이나 결정과정에도 스스로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2.24>

2.9 평가 및 보상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안에서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가 정한 경영목표와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경영전략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장선임의 중요한 평가척도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개정 2005.9.14, 2022.2.24>

②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연도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매년 12월에 이사들은 자신들이 참석했던 이사회와 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서를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는 연간 평가서를 정리·요약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매년 1월 이사회 및 위원회의 토의에 이용한다. <개정 2005.9.14>

기 업 비 밀
사 외 비 CONFIDENTIAL

- ③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자체 평가 및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연간 평가서를 이용하여 차기 연도의 이사회운영 개선과 보상에 활용한다.
<개정 2005.9.14>

2.10 이사의 교육

- ① 회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또한 회사의 장기비전 달성과 주요전략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회의를 연 2회 이상 갖는다.
- ② 회사는 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들의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2.2.24>

Ⅲ. 감사기구

3.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최소한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2.2.24, 2023.12.7>
- ② 감사위원회의 주된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개최시마다 의사록을 작성, 보존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개정 2022.2.24>

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IV.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채권자 보호,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개정 2022.2.24>
-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최대한 지원한다.

V. 공 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②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